

#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 운영 규정

2023. 2. 23.

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

# **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 운영 규정**

## **제1조 목적**

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(이하 조합이라 한다) 지부는 정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지부업무는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**제2조 명칭**

지부의 명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00지부라 칭한다.

## **제3조 관할구역**

지부의 관할구역은 제1지부는 부평구, 계양구 제2지부는 연수구, 미추홀구, 제3지부는 남동구, 제4지부는 서구, 중구, 동구, 제5지부는 강화 일원으로 한다.

## **제4조 사무소**

지부의 사무소는 관할구역내에 둔다.

## **제5조 사업**

지부의 사업은 조합 정관 제5조(조합의 사업)와 조합 및 관계기관의 행정지시사항등 지부원의 민원업무를 처리한다.

<지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>

정관 제5조(조합의 사업)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.
2.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흥 발전과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사업.
3. 조합원의 교육 훈련
4.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관한 사항.
5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6. 교통문화정착운동 및 자율화 업무,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참여

7. 조합원의 공제 및 복지사업
8.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6조 기구

지부에는 지부장 1인으로 운영하며 기타 필요사항은 지부장이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단, 별도의 임원 및 기구를 두지 않는다.

## 제7조 경비 및 보수

1. 공제업무 외에 조합의 업무위임이 있을시 운영규정 및 지부 편성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2.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8조 지부장

조합 정관 제22조(지부장)에 의거하여 선정한다.(단, 기타 제반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.)

## 제9조 지부장 해임

조합 정관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.

1. 부정행위 적발시
2. 공장알선 및 병원알선 3회 발생시
3.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 발견시
4. 기타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대의원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사항) 본 규정 이외의 제반 사항은 조합 정관에 준한다.